

팩스 및 우편 지시에 의한 금융거래에 관한 면책약정서(기업용)

아래 서명 또는 날인한 법인고객(이하 “고객”)과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이하 “은행”)은 ‘팩스 및 우편 지시에 의한 금융거래에 관한 면책약정’(이하 “계약”)을 20__년 __월 __일자로 체결하며, 고객은 이 계약의 조건에 따라 은행의 영업점 창구를 방문하지 않고 “거래지시”(아래 제 2 조에 정의됨)를 할 경우, 은행이 계좌 비밀번호를 확인하거나 원본지시서를 징구하지 않고 아래 “금융거래”(아래 제 1 조에 정의됨)를 수행하는 것에 동의한다.

제 1 조 금융거래의 대상 및 종류

(1) 이 계약에서 “금융거래”라 함은 아래에서 고객이 선택한 거래를 대상으로 한다. 예금계좌(증권관리계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관련된 거래의 경우에는 이 계약 체결 이전에 기개설된 예금계좌뿐 아니라 향후에 개설될 예금계좌에 관련되는 금융거래를 포함한다.

- | | |
|--|-------------------------------------|
| <input type="checkbox"/> 수출입 거래 관련 신청서, 확인서, 기타 지시서 등 | <input type="checkbox"/> 계좌간 자금이체 |
| <input type="checkbox"/> 은행보증서 및 보증신용장 관련 신청서, 확인서, 기타 지시서 등 | <input type="checkbox"/> 기타 (_____) |
| <input type="checkbox"/> 계좌해지 및 해지금액 이체 | |
| <input type="checkbox"/> 해외 송금 | |

(2) 은행 영업점 창구에서의 거래는 제외되며, 창구에서의 거래 시에는 영업점 창구의 통상적인 업무수행방법에 따라 거래한다.

제 2 조 거래지시의 방법 및 처리

(1) 이 계약에서 허용되는 거래지시의 종류는 다음과 같으며, 인감 또는 서명으로 거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팩스에 의한 지시
2. 원본을 우편을 통하여 은행에 전달하는 방법(은행의 담당직원이 고객을 방문하여 직접 수령하는 경우 포함)에 의한 지시

(2) 고객이 거래지시를 은행에 보내는 경우에 당해 서비스 또는 예금계좌와 관련하여 은행에 사전에 등록한 서명 내지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

이 약관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 (3) 은행은 이 계약에 따른 고객의 거래지시를 따르기 전에 다음의 경우에 해당 할 시 고객이 지정한 유선확인 대리인(별첨 참조)을 통해 유선확인(call back)을 하고, 고객은 팩스로 거래지시를 하는 경우 거래지시 후 15 영업일 이내에 원본서류를 제출한다.

<다음>

- 신규 수취인계좌로 USD250K(미화 이십오만불) 상응하는 금액의 초과금액이 이체되는 경우
 - 기존 수취인계좌로 USD5mil (미화 오백만불) 상응하는 금액의 초과금액이 이체되는 경우. 여기서 '기존 수취인계좌'란, 동일 은행의 동일한 계좌로 6 개월내 유선확인(call-back)에 따라 송금한 기록이 있거나, 유선확인에 따라 송금한 거래기록이 6 개월 이내인 반복송금을 의미한다.
- (4) 외국환거래법 또는 다른 관련 법규에 따라 요구되는 서류들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지시를 위해 필요서류가 전부 제출되어야 한다.
- (5) 고객이 이 계약에 따라 연결계좌의 해지지시를 하는 경우, 은행은 그 해지금액을 근거계좌에 입금한다.

제 3 조 은행의 확인 의무 및 책임

- (1) 은행이 제 2 조에 따라 거래지시를 받을 경우에 은행은 육안을 통하여 거래지시서에 날인된 인감이나 서명과 당해 서비스나 예금계좌와 관련하여 은행에 등록된 인감이나 서명과의 동일성을 확인하여야 하며, 은행이 상당한 주의로 써 대조하고 이상이 없다고 판단하여 동 거래지시에 따른 경우에는 그 진위 여부와 상관없이 정상요청건으로 간주하기로 하며, 이와 관련하여 은행의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계약에 따른 은행의 행위에 대하여 은행은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 (2) 은행이 이 계약에 따른 거래지시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지연하여 이행하게 되고, 만약 그 사유가 화재, 통신장애, 정전 등의 불가항력에 기인한 경우에는 은행은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고객의 손해 및 손실에 대하여 은행의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 (3) 고객은 (i) 이 계약에 따른 거래지시에 내재되는 위험(잘못된 전송이나 오류로 인한 전송 지연, 중단, 손상, 누락, 분실, 제 3 자에의 정보유출 및 은행담 당자에게 전달되지 않을 가능성 등의 위험)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ii) 은행 이 동 위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고객의 손해 및 손실에 대하여 은행의 고의나 과실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책임을 부담하지 않음을 인정한다.

- (4) 거래지시내용이 부정확하거나 거래지시서에 표기된 각종 정보(계좌번호, 예금 주 등)가 정확하지 않아 거래지시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나 시스템장애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은행이 거래지시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 은행은 거래 지시를 수행하지 않은 사실과 그 이유를 지체없이 고객에게 통지하기로 한다. 은행이 거래지시 내용이나 표기정보가 부정확한 사유로 인해 거래지시를 수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고객은 거래지시 내용을 보완하여 은행에 거래지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은행이 고객의 예금계좌로부터 거래수행을 위한 자금을 인출한 후에 거래지시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고객의 예금계좌에 동 자금을 다시 입금하기로 한다.

제 4 조 기타사항

- (1)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된다.
- (2) 이 계약이 한글본과 영문본으로 체결되고, 한글본과 영문본이 상치되는 경우에는 한글본이 우선한다.
- (3) 이 계약은 일방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최소 1 개월 이전에 서면으로 해지통지 할 때까지 효력을 갖는다. 다만, 예금계좌와 관련된 계약은 고객이 은행에 개설한 예금계좌가 모두 해지될 경우에는 그 해지 시점에 자동으로 해지된다.
- (4) 이 계약에 달리 규정된 바를 제외하고는, 은행과 고객간의 해당 금융거래를 규율하는 개별 약관과 약정서에 따르며, 이 계약과 해당 약관이나 약정서 간에 불일치가 있는 경우에는 이 계약이 우선한다.

제 5 조 특약사항

동 약정서 4 조 3 항에도 불구하고, 고객과 HSBC 는 ___년___월___일 까지 약정을 유지하도록 한다.

고객

[_____] _____(인/서명)

주소 :

전화번호

이 약관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별첨>

유선확인 대리인 지정서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이하 “은행”)은 ‘팩스 및 우편 지시에 의한 금융거래에 관한 면책약정’ 제 2 조 제 3 항에 의거하여 유선에 의한 확인을 위하여 아래에 지정된 유선확인 대리인과 연락하도록 수권받습니다. 본 지정서는 은행이 서면으로 본 지정서에 대한 해지 통지를 받을 때까지 유효합니다. 유선확인 대리인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은행에 서면으로 통보하기로 합니다. 유선확인 대리인 정보가 별지로 제공되거나 추가자면이 필요한 경우 서명/날인된 별지는 본 지정서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유선확인 대리인 성명	직위	전화번호	대체전화번호	팩시밀리번호
1					
2					
3					
4					
5					

날짜:

고객 기명날인 또는 서명

이 약관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